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 12. 11.

사건번호 2016년 형제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자

검사

제 · 투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주

직업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강요미수

적용법조 구 형법(법률 제11781호) 제324조의5, 제324조, 제30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 II. 공소사실

#### 【피고인, 대통령의 각 신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

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 (이하 대통령'이라 한다)는 2013. 2. 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전권, 전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해자 이 은 C 그룹 회장 이 의 누나로서, 1995.경 제 에 입사하여 1998.경 제 멀티미디어 사업부 이사, 2002.경 C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상무,

2005.경 C 아메리카·C 미디어·C 엔터테인먼트 각 부회장, 2011.경부터 C 그룹  
부회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특히, 2011. 3.경부터 C 주식회사<sup>1)</sup>(이하 'C'  
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C 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손 은 피해자 이 의 외삼촌으로서 삼  
대표이사 부회장, C 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하던 중, 2013. 7. 경 C 그룹  
총수 이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구속되자 그때부  
터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그룹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2005. 11.경부터 2013. 7.경  
까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4회 연임)을 역임한 차별이다.

피해자 이 은 위와 같이 C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C 그룹 내 엔터  
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여 왔는데,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 6.경 C  
의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 채널 t 의 인기 프로그램인 'S' 의 시사·  
정치 풍자코너 '여의도 텔레토비'를 통해 당시 세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박  
근혜를 회화화하는 취지의 방송을 송출하였고, 2012. 9.경 C 영화 '광해, 왕  
이 된 남자'(당시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문재인) 은 위 영화를 감상한 후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을 생각나게 하는 영화라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평하기도 함)를 기  
획·투자·제작하였으며, 2013. 7.경에는 C 의 계열사인 C 가 노  
무현 前 대통령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제작에 투자를 검토하기도  
하는 등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에 있는 청와대 본관에서 이  
루어진 경제부총리의 청와대 정례 보고 직후 대통령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  
령으로부터 'C' 이 걱정된다, 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  
부회장은 C 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1) 2011. 3.경 C 계열사인 C 등 6개 콘텐츠 관련 계열사가 합병되어 설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7. 경 C 회장 이 이 1,600억 원 대의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C 이 비상경영 체제에 놓이게 된 것을 기화로 경제수석으로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C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던 피해자 이 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중구 소공로 에 있는 서 호텔 5층 비즈니스센터 미팅룸에서, 위 이 의 구속 이후 C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던 피해자 손 에게 "V )의 뜻입니다,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경영에 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2013. 7. 하순경 피해자 손 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손 에게 "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선생님 조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하시는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라고 있었거든요", "C 가 건강한 기업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정치색이 없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V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뜻이 확실합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리입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손 으로부터 청와대 내부의 합의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컨센서스 가 무슨 컨센서스입니까, 그냥 쉬라는데요, 그 이상 뭐가, 뭐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하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 의 구속에 이어 재차 C 이나 피해자 이 에 대하여 검찰 추가수사 또는 세무·공정거래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2)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칭하는 말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이 으로  
하여금 C 부회장 자리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협박하여 행위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  
으로써 피수에 그쳤다

### III. 첨부

1.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1부
2. 구속영장청구서(판사기각) 1부
3. 변호인선임서 3부
4. 피의자석방보고서 1부

